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58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김재원 · 이정문 · 강준현
신장식 · 임오경 · 박정현
김한규 · 이해민 · 김교홍
소병훈 · 김성원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

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책’를 추가함(안 제28조제7호의2 신설).
-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1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라.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9항 및 제12항 신설).

마.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하고, 국내대리인의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 및 제48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

제31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8조제2항제7호의2에 따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제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지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부터 제10까지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자료제출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5조제11호 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9항 전단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제1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

제48조제1항 중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자
6.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생 략) ② (생 략)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u> <u>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28조제2항제7호의2에 따</u> <u>른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u> <u>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u>

2. (생 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현행과 같음)

② -----
-----.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국
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
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
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
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제1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법
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으
로 지정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
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

<신 설>

③ ~ ⑤ (생 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
내에서 게임물이 유통 또는 제
공되는 기간 동안 그 지정을 중
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 유
지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와 같음)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
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
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
니하거나 국내대리인이 의무사
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⑨ (생략)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
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
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⑪ (생략)

<신설>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⑪ -----제10항-----

-----.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⑬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39조의3(자료제출 요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
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
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u>된 경우</u> <u>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u> <u>3.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u> <u>4. 그 밖에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u>제38조제9항</u>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제45조(벌칙)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38조제9항 전단 및 제10항</u> ----- ----- 12. <u>제38조제1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u>
제48조(과태료) ① <u>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u>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제48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u>

<u><신 설></u>	<u>한 자</u>
<u><신 설></u>	2.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u><신 설></u>	3.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u>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 르지 아니한 자</u>
<u><신 설></u>	4.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5.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u>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유지하 지 아니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 의로 변경한 자</u>
<u><신 설></u>	6. 제39조의3을 위반하여 자료를 <u>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 료를 제출한 자</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